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9 선고 2020가단505677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

담당변호사 최영식, 김승식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규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엄태모

변 론 종 결 2021. 4. 21.

판 결 선 고 2021. 6. 9.

주 문

1.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. 3. 체결된 매매계약을 103,306,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3,306,0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

1) 원고는 2016. 10.경 주식회사 E(이하 ‘E’라 한다)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주식회사 F, 보험가입금액 3,000만 원, 보험기간 2016. 10. 1.부터 2017. 9. 30.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 및 ② 피보험자 주식회사 G, 보험가입금액 5,000만 원, 보험기간 2016. 10. 12.부터 2017. 10. 16.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(이하 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‘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’이라 한다)을 각 체결하였고, D는 E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2) 원고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에게 2017. 2. 20. 3,000만 원, 같은 해 4. 21. 4,950만 원 합계 7,950만 원을 지급한 후 E, D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4101)를 제기하였고, 2017. 8. 23. 위 법원으로부터 E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,355,889원과 그 중 3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7. 5. 22.부터 2017. 6. 23.까지는 연 12%의, 49,500,000원에 대하여는 2017. 5. 22.부터 2017. 6. 23.까지는 연 9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. D에 대한 위 판결은 2017. 10. 11. 확정되었다.

나. D의 처분행위

1) D는 2016. 11. 17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6. 11. 3.자 매매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

마쳐주었다.

2)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7. 27. 채권최고액 248,400,000원, 채무자 D, 근저당권자 H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 이후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16. 12. 30. 채무자를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피고 B의 처분행위

피고 B는 2017. 10. 27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7. 10. 26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2019. 4. 2.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, 2020. 1. 22. 같은 달 1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D의 무자력

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(이하 ‘이 사건 빌라’라 한다)가 있었다.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절차가 진행되었는데,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빌라는 140,600,000원에 매각되었고, 2018. 12. 19.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금액은 합계 172,971,346원이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발생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

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D는 2016. 10.경 이 사건 보증보험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,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원고가 가까운 장래에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D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가 3자간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M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므로 D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, 채무자인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또한 D가 E의 대표이사인 점,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시기, D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, 수익자인 피고 B,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

1) 살피건대,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수익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, 전득자인 피고 C은 이를 다시 I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자인 D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. 따라서 피고들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할 의무가 되고, 그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.

2) 가액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.

감정인 N의 감정결과,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, 2020. 9. 4.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368,639,740원인 사실,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2016. 10. 27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05,840,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020. 9. 4. 기준 감정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다투지 않고 있고, 을 제2호증(O와 D간 매매계약서)에 기재된 매매대금 350,00,000원보다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도 합계 368,639,74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은 162,799,740원(= 368,639,740원 - 205,840,000원)이다.

한편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. 6. 3. 현재 원고의 채권액은 128,110,722원인바, 원고가 구하는 채권액은 그 중 103,306,090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액보다 적은 금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인 103,306,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공동하여 103,306,0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윤희

별지

목 록

1. 경기 양편군 P 대 581㎡

2. 경기 양편군 P 지상

Q단지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

철근콘크리트지붕 2층

단독주택

1층 80.22㎡

2층 53.97㎡. 끝.